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4108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73	박수영의원	2024.7.17.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 9.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2		2204949	김성환의원	2024.10.28.	제422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3		2207907	이종배의원	2025.2.5.	제429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4		2210260	이정문의원	2025.4.30.	
5		2210295	권칠승의원	2025.5.1.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화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을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중소기업의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데이터 생성 및 활용 등 지원을 추가함.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재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비율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국회 지침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협동조합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3년 이하’ 수준에 맞게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106조)

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다.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8조의4 및 제121조의2 신설 등)

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

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함(안 제138조)

법률 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나목 중 “기업의”를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정보화”를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의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등 지원

⑨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중소기업자에게 제8항제2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상여부 확인”을 “대상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5절에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138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 략) ② 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6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 28. (생 략) ② ~ ⑦ (생 략) ⑧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	제106조(업무) ①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의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등 지원 5. ~ 28.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

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업의 출연금	나.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정보화 사업	마.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중소기업자에게 제8항제2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 대상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

	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38조(벌칙) ----------3천만원----------.